



즉시 배포용: 2023년 7월 1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시민들에게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가격 폭등에 주의하라고 경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지역에서 가격 폭리법 발동

뉴욕주 소비자 보호부, 불안 제기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시민들에게 온타리오 카운티 미드 허드슨 지역과 캐넌다이과 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기상 현상의 여파에 따른 물품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Kathy Hochul 주지사는 폭우로 인한 심각한 홍수, 수많은 도로 폐쇄 및 기타 폭풍 관련 피해가 발생하자 [여러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뉴욕주의 가격 폭리법 금지법이 발동되어 피해 지역의 소비자에게 비양심적으로 과도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주 전역의 악천후로 인한 엄청난 영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소매업체들이 가격을 부풀리는 것은 양심적이지 않은 행위입니다. 지역사회가 극심한 홍수로부터 계속 회복됨에 따라 모든 뉴욕 시민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잠재적 사기꾼을 경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소비자를 악용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obert J. Rodriguez 뉴욕주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우와 심각한 홍수로 인해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지역의 뉴욕주민들이 극심한 기상 현상의 영향에서 회복되기 시작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너무 높거나 무분별하게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는 사업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 또는 일반 대중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중요하고 필요한 필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되는 동안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무의식적으로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면서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 "가격 폭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과도한 가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 질병 또는 질환의 관리, 완화,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필수 의료 용품 및 서비스, 또는
- 대중의 건강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 모든 필수 상품 및 서비스.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이란 기상 악화, 자연재해, 전력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고장 또는 부족 사태, 기타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어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인해 시장에 실제 또는 임박한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양심적으로 과도한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판매자가 부과하는 가격과 기상 이변이 시작되기 직전에 동일한 판매자가 부과하는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2. 판매자가 기상이변 기간 동안 부과하는 가격이 다른 소비자가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상당히 많이 초과하는 경우.

가격 폭등에 대한 소비자 대응

악천후를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가족 또는 가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지나치게 비싼 소비재 및 서비스를 발견한 뉴욕 시민은 DCP 소비자 지원 직통전화 800-697-1220번으로 전화하거나 DCP 웹사이트 www.dos.ny.gov/consumerprotection을 방문하여 뉴욕주 소비자 보호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DCP)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협력업체, 소매업체 및 공급업체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맹점의 위치와 영수증 또는 사진과 같은 과도한 가격에 대한 모든 증거를 포함하여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DCP 소비자 지원부(Consumer Assistance Unit)는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소비자를 대신하여 자발적 중재에 참여하거나 법무부 장관실(Office of Attorney General)에 불만 사항을 회부하여 집행 조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지원 부서는 두 경우 모두 소비자를 대신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악천후가 발생하는 동안 가격 폭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부 소개

뉴욕주 소비자 보호부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자발적 중재서비스를 비롯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원과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원 직통전화(Consumer Assistance Helpline) 1-800-697-1220 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뉴욕주의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불만 민원은 www.dos.ny.gov/consumer-protection에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 보호 팁을 보려면 트위터(@NYSCConsume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nysconsumer)에서 이 부서를 팔로우하세요.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